

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					환급방법	계좌 입금 () 현금 지급 ()	처리기간 즉 시
납 세 자	① 성명 (대표자)				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③ 상호 (법인명)				④ 사업자등록번호		
	⑤ 주소 (영업소)						
	⑥ 전화번호 (휴대전화:)		⑦ 전자우편주소				
	⑧ 환급계좌 (은행)						
구분	⑨ 세 목	⑩ 납부 연월일	⑪ 과세 번호	⑫ 기 납부세액	⑬ 총 공제세액	⑭ 기 공제세액	⑮ 환급세액 (⑮=⑬-⑭)
환급 세액							
	계						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. ※ 첨부: 담배소비세액 공제·환급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장·군수 귀하							

작성방법

□ **환급방법란**: 원하시는 방법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□ 인적사항(납세자)란

- ① 성명(대표자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(내국인)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법인명): 개인사업자는 상호,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- ⑧ 환급계좌: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합니다.

□ 과오납 또는 환급세액란

- ⑨ 세목: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⑩ 납부 연월일: 당초 납부한 지방세의 납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⑫ 기 납부세액: 공제받기 전 이미 납부한 실제세액을 적습니다.
- ⑬ 총 공제세액: 이미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총 세액을 적습니다.
- ⑭ 기 공제세액: 세액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⑮ 환급세액: 총 공제세액에서 기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